

**【2014.1차 수사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】**

1.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㉠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.
- ㉡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.
- ㉢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.
- ㉣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.

- ① 1개      ② 2개      ③ 3개      ④ 4개

1. ②

- ㉠ **탄핵주의 소송구조**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.
- ㉢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**수사의 상당성**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.

2.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.
- ②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.
- ③ 현행 수사체계는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지휘로 인하여 '명령·지휘계통의 일원화'라는 행정조직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저해시킨다.
- ④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.

2. ④

■ 수사권독립 찬반론 정리

| 찬성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대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국민의 편익저해 (13 순경, 10 승진, 09 순경, 01 순경)           | ① 공소권의 주체가 수사의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현실과 범규범의 괴리 (13 순경, 11 승진, 09 순경, 01 순경)        | ② 경찰은 수사의 합목적성만 강조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행정조직원리에의 위배 (11 순경, 11 승진, 10 승진, 09 순경, 01 순경) | ③ 법집행의 왜곡과 인권보장 (11 승진, 10 승진, 08 승진)       |
| ④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(13 순경, 11 순경, 10 승진, 09 순경, 01 순경) | ④ 경찰에의 권력집중 견제 (11 순경, 10 승진, 08 승진)        |
| ⑤ 경찰업무의 과중화 (10 승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<b>검사의 지휘가 수사력을 강화</b>                    |
| ⑥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(13 순경, 11 순경, 11 승진)       |
| ⑦ 권력의 집중현상 해소 (11 순경, 11 승진, 10 승진)               | ⑦ 경찰, 검찰에서 반복된 조사에 따른 새로운 실체적 진실 발견 (08 승진) |

3.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-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-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.
-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-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.
-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-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.

3. ④

**검증적수사의 원칙** -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.

4. 「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」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㉠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,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,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.
- ㉡ 수사본부장 및 부분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.
- ㉢ 「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」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㉣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.
- 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,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.

- ① 1개      ② 2개      ③ 3개      ④ 4개

4. ②

- ㉡ 수사본부장 및 부분부장의 지명권자는 **지방경찰청장**이다.
- ㉢ 「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」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**방화사건은 포함된다.**

5. 「수사정보및처리규칙」상 범죄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이송을 하는 정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.
- ② 수집된 정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③ 평가책임자는 정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송해야 한다.
- ④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5. ①

- ② 수집된 정보는 **수집관서에서**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③ 평가책임자는 정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**이송할 수 없다**.
- ④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**비공개**를 원칙으로 한다. **다만**,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 목적상 정보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.

6. 「고소·고발사건이송및수사촉탁에관한규칙」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한 후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사건에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
- ② 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
- ③ 참고인조사가 필요한 경우
- ④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,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6. ③

■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이송할 수 있는 경우

- ㉠ 사건에 대해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다만, 사건 접수시 관할권이 있었으나 이후 관할권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
- ㉡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,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㉢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
- ㉣ 기타 사건을 이송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7. 「수사긴급배치규칙」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
- ②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
- ③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- ④ 범인의 성명, 주거,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

7. ②

■ 긴급배치 생략 및 해제사유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생략사유 | ①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<br>②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한 때<br>③ 범인의 성명·주거·연고지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<br>④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될 때 |
| 해제사유 | ① <b>범인을 체포하였을 때</b><br>② 허위의 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<br>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8. 「통신비밀보호법」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?

- ①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
- ②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
- ③ 이용자의 가입·해지일자
- ④ 발·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

8. ③

■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

| 통신사실확인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신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전기통신개시·종료시간<br>②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<br>③ 발·착신 통신번호등 상대방 가 입자 번호<br>④ 사용도수<br>⑤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로그 기록 자료<br>⑥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<br>⑦ 접속자의 추적자료<br>(14 승진, 11 승진, 10 승진, 05 승진) | ① 가입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가입 및 해지일자 등에 관한 자료<br>② 전화번호, ID<br>③ 특정시간, 특정유동IP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가입자정보만 요구하는 경우 |

9. 「사범경찰관리집무규칙」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㉠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.
- ㉡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.
- ㉢ 기타 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-1, 1-2, 1-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.
- ㉣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.
- ㉤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, 압수물총목록, 의견서, 기록목록,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.

- ① 2개      ② 3개      ③ 4개      ④ 5개

9. ③

- ㉠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.
- ㉡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**송치인**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.
- ㉢ **의견서** 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-1, 1-2, 1-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.
- ㉣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, 압수물총목록, **기록목록, 의견서**,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.

■ 편철순서

**편철순서**  
(12 순경, 10 순경, 07 순경, 02 순경, 99 순경, 98 순경)

사건송치서 → 압수물 총목록 → 기록목록 → 의견서 → 기타 서류

암기방법

▶ 사건 압수 기록 의 기타

- ①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압수물 총목록, 기록목록,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.
- ② 의견서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,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,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-1, 1-2, 1-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③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.
- ④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.

10. 「범죄수사규칙」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옳은 것은?

- ① 특별장물수배서 - 청색용지 -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
- ② 중요장물수배서 - 흑색용지 -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이외의 중요사건
- ③ 보통장물수배서 - 청색용지 -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
- ④ 특별중요장물수배서 - 홍색용지 -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

10. ④

■ 장물수배서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|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발부  | 홍색 용지 |
| 중 요 장물수배서   |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수사하는 중요사건에 발부 | 청색 용지 |
| 보 통 장물수배서   | 보통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발부            | 백색 용지 |

11.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현장지문, 준현장지문 중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, 즉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유류 지문이라고 한다.
- ② 범인의 침입경로,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.
- ③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,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고 한다.
- ④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용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.

11. ④

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용선이라면 이는 **정상지문**으로 볼 수 있다.

12. 「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㉠ 검찰총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
- ㉡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㉢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㉣ 법원의 무죄, 면소,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① 0개      ② 1개      ③ 2개      ④ 3개

12. ③

- ㉠ **검찰총장은 수형인등에 대해**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 **경찰청장은 구속피의자 및 범죄현장에서**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
- 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수형인 등 및 구속피의자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**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.**

## 13.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회선총알상처 - 탄두가 체표만 찔과 하였을 경우
- ② 반도총알상처 -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집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
- ③ 관통총알상처 -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
- ④ 맹관총알상처 -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

## 13. ②

- ① **찰과총상** - 탄두가 체표만 찔과 하였을 경우
- ③ **맹관총상** -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
- ④ **회선총상** -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

## ■ 총상의 종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통총상 | 총알입구, 사창구,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
| 맹관총상 |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있을 경우                   |
| 찰과총상 | 탄두가 체표만 찔과하였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반도총상 |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집이나 피부밑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|
| 회선총상 |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하였을 경우   |

## 14. 「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.
-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.
- ③ 외포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(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)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.
- ④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.

## 14. ④

- ① 동시에 **3명 이상**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.
-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**2인내지 5인**을 **1조**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.

- ③ **간이검사**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(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)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.

## 15. 「우범자정보수집등에관한규칙」상 정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?

- ① 살인으로 실형(금고형 이상)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, 상습성,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
- ② 강도·절도·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, 상습성,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
- ③ 강간·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, 상습성,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
- ④ 강간·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, 상습성,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

## 15. ②

강도·절도·마약류 관련 범죄로 **3회 이상 금고형 이상**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정보수집대상자이다.

## 16.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제30조(영상물의 촬영·보존 등)에 대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( )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·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( )이(가)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① 16세 미만 - 피해자
- ② 16세 미만 -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
- ③ 19세 미만 - 피해자
- ④ 19세 미만 -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

## 16. ④

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**19세 미만**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·보존하여야 한다. 영상물 녹화는 **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**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7. 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㉠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족 구성원에 포함된다.  
 ㉡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.  
 ㉢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 
 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 
 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 제한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  
 ㉥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절도가 포함된다.

- ① 1개      ② 2개      ③ 3개      ④ 4개

17. ③

- ㉠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**있었던** 사람도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.  
 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**10일**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 
 ㉥ 가정폭력범죄에는 **형법상 절도가 포함되지 않는다**.

18.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
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,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물질

- ① 한외마약      ② 반합성마약  
 ③ 합성마약      ④ 천연마약

18. ①

한외마약에 대한 내용이다.

19. 「저작권법」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.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공표권      ② 복제권  
 ③ 성명표시권      ④ 동일성 유지권

19. ②

■ 저작인격권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표권     |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                    |
| 동일성 유지권 |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·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.                     |
| 성명 표시권  |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. |

20. 「공직선거법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.  
 ②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.  
 ③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.  
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.

20. ③

■ 선거권과 피선거권

|              | 선거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선거권자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통령          | 19세 이상 국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이상 국내거주<br>40세 이상 국민   |
| 국회의원         | 19세 이상 국민<br>주민등록자, 선거구역 안에 거주<br>(3개월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세 이상 국민                 |
| 지방자치단체<br>의원 | 19세 이상 국민<br>주민등록자, 선거구역 안에 거주<br>(3개월 이상)<br>※ 외국인, 영주체류자격 취득일<br>후<br>3년 경과한 외국인 | 60일 이상 주민등록자<br>25세 이상 국민 |